

입소계약

제1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수급자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 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아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별표 1>

* 상기 표는 2025. 1. 1부터 적용됨

등급	1등급		2등급		3, 4. 5등급	
1일수가	86,030		79,810		75,360	
시설입소기간	30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급여총액	2,580,900	2,666,930	2,394,300	2,474,110	2,260,800	2,336,160
공단부담금80%	2,064,720	2,133,550	1,915,440	1,979,290	1,808,640	1,868,930
본인부담금20%	516,180	533,380	478,860	494,820	452,160	467,230
합계액(20%)	888,180	917,780	850,860	879,220	824,160	851,630
공단부담금88%	2,271,200	2,346,900	2,106,990	2,177,220	1,989,510	2,055,830
본인부담금12%	309,700	320,030	287,310	296,890	271,290	280,330
합계액(12%)	681,700	704,430	659,310	681,290	643,290	664,730
공단부담금92%	2,374,430	2,453,580	2,202,760	2,276,190	2,079,940	2,149,270
본인부담금8%	206,470	213,350	191,540	197,920	180,860	186,890
합계액(8%)	578,470	597,750	553,540	582,320	552,860	571,290
비급여 (식재료비)	위의 합계액은 공단 비급여인, 식비가 포함 된 금액임. 1식 3,800 / 1일 3,800*3=11,400 / 간식 1일 1,000원 / 30일 기준372,000원					

제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수급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③ 수급자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제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수급자에게 심한 지장을 줄 때
- 3. 1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 4. 시설 내에서 시설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5. 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때
-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7.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3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 2.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

제4조(퇴소)

- 1. 시설 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와 통화 후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 2. 연고자에게 인계 시에는 연고자로부터 신병인수증을 받는다.

제5조(전원조치)

시설 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 할 수 있다.

제6조(강제퇴소)

시설 입소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강제퇴소 조치할 수 있다.

- 1. 외출·박 또는 무단이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이 지나도록 귀원하지 아니하는 입소자
- 2. 개인적인 잘못으로 각서를 5회 이상 제출한 입소자 (104조 참조)
- 3.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입소자

제7조(사망자에 대한 처리사항)

- 1. 원내에서 사망한 입소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교부 받아 매장 및 화장을 실시한다.
- 2. 요양원 입원 중 사망자는 사체를 인도받아 협력병원 영안실에서 장례절차를 밟아 매장 및 화장을 실시한다.
- 3. 사체를 연고자 및 친척이 인도를 요구 할 경우 인도할 수 있다.
- 4. 시설장은 사망자에 대한 처리 사항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망 시 재산의 처리)

1.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리한다.
2.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제48조(유류금품의 처분)에 의거하여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3. 남은 유류금품의 경우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이 없을 경우나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시설에 90일 공고를 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유족이 나타날 경우에는 유족을 증빙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유류금품을 인수토록 한다.
 - ②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유족이나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 결재를 득한 후 유류금품을 기부금으로 입금 처리한다.

제9조(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입소자가 계약종료일까지 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퇴소 시까지 이용료 상당액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한다.